

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9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2. 18.

김향숙 의원 등 6인

나. 회부일자: 2025. 2. 25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3. 17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향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·예방을 위한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주요내용

-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(안 제3조)
- 위촉, 임기 및 해촉(안 제4조 및 제5조)
- 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(안 제6조)
- 신고 절차 등(안 제7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환경정책기본법」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3호
- 예고기간: 2025. 2. 18.(화) ~ 2025. 2. 24.(월)[6일간]

- 예고결과: 의견 1건(환경과)

| 조례안 내용 | 수정안 | 수정이유 |
|--|--|--|
|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명명된 “명예환경감시원” | 조례안에 명명된 “명예환경감시원”을 “민간환경감시단” 등으로 명칭 일괄 변경 | 본 조례에 명명된 “명예환경감시원”이란 명칭은 환경부 “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(2014.2.)”에 따라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운영하는 “명예환경감시원”과 중복되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“민간환경감시단” 등으로 명칭 일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 |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·예방을 위한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1조 ~ 제2조) 목적 및 정의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,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규정함.

- (안 제3조)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

- 안 제3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구체적인 임무 및 활동 중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.

- (안 제4조 ~ 제6조) 위촉, 임기 및 해촉, 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

- 안 제4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에 따른 자격 요건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안 제5조에서는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, 안 제6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증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.

- (안 제7조 ~ 제8조) 신고 절차 등, 교육 및 활동지원 등
 - 안 제7조에서는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신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안 제8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위한 교육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각각 규정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고성군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었으나
 - 조례안에 명명된 ‘명예환경감시원’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환경부 및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운영·관리하는 ‘명예환경감시원’과 명칭이 동일하여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, 기존 고성군에서 구성 운영 중인 ‘민간환경감시단’으로 변경(조문 내 일괄 변경)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3. 17. 수정가결

- 붙 임 1. 「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 수정안
- 2. 「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「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 수정 제안서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2898호 관련 |
|------|--------------|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안연월일 | 2025. 3. 17. |
| 발 의 자 | 김원순 의원 |

1. 수정이유

- “명예환경감시원” 은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동일하여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- 조례안의 제명 및 본문, 별지 내용 중 “명예환경감시원” 을 “민간환경 감시단” 으로 한다.

「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 대한 수정안

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” 을 “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” 으로 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명예환경감시원” 을 “민간환경감시단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 중 “명예환경감시원” 을 “민간환경감시단” 으로 한다.

제3조 제목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명예환경감시원” 을 각각 “민간환경감시단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조제2항 중 “명예환경감시원” 을 “민간환경감시단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,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제2호 중 “명예환경감시원” 을 각각 “민간환경감시단” 으로 한다.

제6조 제목,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“명예환경감시원” 을 각각 “민간환경감시단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중 “명예환경감시원” 을 “민간환경감시단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“명예환경감시원” 을 “민간환경감시단” 으로 한다.

별지제 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중 “명예환경감시원” 을 “민간환경감시단” 으로 한다.

한다)이란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)

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(생략)

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~ 2.(생략)

제4조(위촉)

①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명예환경감시원이 되고자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.

1. ~ 3.(생략)

②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한다)이란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 및 행위제한)

① 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(현행과 같음)

② 민간환경감시단-----

--.

1. ~ 2.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위촉)

① -----
----- 민간환경감시단-----

민간환경감시단-----

-----.

1. ~ 3.(현행과 같음)

② 민간환경감시단-----

-----.

제5조(임기 및 해촉) ① 명예환

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
3. (생략)

제6조(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) ① 군수는 명예환경

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.

② 명예환경감시원은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기 및 해촉) ① 민간환

경감시단-----

② ----- 민간환경감시단---

-----민간환경감시단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민간환경감시단-----
-----민간
환경감시단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민간환경감시단증 교부 및 관리) ① ----- 민간환경

감시단-----
----- 민간환경감시단---
-----.

② 민간환경감시단-----

-----민간환
경감시단-----.

명예환경감시원 신청서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|
| ① 성 명 | | ② 생년월일 | |
| ③ 직 업 (직 위) | | ④ 전화번호 | |
| ⑤ 주 소 (우편번호) | 우편번호 : | | |
| ⑥ 학 력 | | | |
| ⑦ 경 력 | | | |

1. 위 본인은 고성군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평소 실천을 생활화하고,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·신고 및 군민제도·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명예환경감시원 신청서를 제출하며

2. 아울러, 위촉시 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제시된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.

붙 임 사진 2매

년 월 일

신청인

(인)

고 성 군 수 귀 하

민간환경감시단 신청서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|
| ① 성 명 | | ② 생년월일 | |
| ③ 직 업 (직 위) | | ④ 전화번호 | |
| ⑤ 주 소 (우편번호) | 우편번호 : | | |
| ⑥ 학 력 | | | |
| ⑦ 경 력 | | | |

1. 위 본인은 고성군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평소 실천을 생활화하고,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·신고 및 군민제도·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민간환경감시단 신청서를 제출하며
2. 아울러, 위촉시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제시된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.

붙 임 사진 2매

년 월 일

신청인

(인)

고 성 군 수 귀 하

고성군 명예환경감시원증

(앞면)

| |
|---|
| <p><u>명예환경감시원증</u> (제 호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px; height: 100px; margin: 0 auto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<p>사 진 (3cm×4cm)</p></div> |
| 성 명: |
| 생년월일: |
| 위촉기간: |
| 고 성 군 수(직인) |

(뒷면)

| |
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계도활동,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,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.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.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 <p>신고처 : 고성군청 환경과</p> |
|--|

○ 용지규격 : 6cm×9cm (가로×세로)

○ 지 질 : 120L/B

○ 색 상 : 노란색

○ 사 진 : 3cm×4cm (가로×세로)

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증

(앞면)

| |
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민간환경감시단증</u> (제 호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px; height: 100px; margin: 0 auto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<p>사 진 (3cm×4cm)</p></div> <p>성 명: 생년월일: 위촉기간: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고 성 군 수(직인)</p> |
|---|

(뒷면)

| |
|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계도활동,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,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.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.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 <p>신고처 : 고성군청 환경과</p> |
|---|

○ 용지규격 : 6cm×9cm (가로×세로)

○ 지 질 : 120L/B

○ 색 상 : 노란색

○ 사 진 : 3cm×4cm (가로×세로)

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(김향숙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898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2. 18.

발 의 자 : 김향숙, 김석한, 김원순,
허옥희, 김희태, 이쌍자
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·예방을 위한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주요내용

- 가. 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 및 행위제한(안 제3조)
- 나. 위촉, 임기 및 해촉(안 제4조 및 제5조)
- 다. 민간환경감시단증 교부 및 관리(안 제6조)
- 라. 신고 절차 등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환경정책기본법」
- 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3호
 - 예고기간: 2025. 2. 18.(화) ~ 2025. 2. 24.(월)[6일간]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·예방을 위한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오염” 및 “환경훼손”이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.
2. “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”(이하 “민간환경감시단”이라 한다)이란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·신고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중”(이하 “민간환경감시단”이라 한다)이란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 및 행위제한) ① 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환경훼손 행위 및 대기·수질·소음·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
2.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
3.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

4.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민간환경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개별 사업장을 출입·감시하는 행위
2.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

제4조(위촉) ①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민간환경감시단이 되고자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한다. 다만,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.

1.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자
2.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읍·면장, 환경관련 기관·단체에서 추천하는 자

②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기 및 해촉) ① 민간환경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민간환경감시단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출타, 질병,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2. 민간환경감시단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민간환경감시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
3.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

제6조(민간환경감시단증 교부 및 관리) ①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환경감시단증을 교부한다.

② 민간환경감시단은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민간환경감시단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7조(신고 절차 등) ① 민간환경감시단은 오염 우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고한 민간환경감시단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 및 활동지원 등) ①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, 전문지식 제공,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(발췌)

□ 환경정책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27., 2019. 1. 15.>

4. “환경오염”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 방해,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
5. “환경훼손”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(濫獲) 및 그 서식지의 파괴, 생태계 질서의 교란, 자연경관의 훼손, 표토(表土)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.

민간환경감시단 신청서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|
| ① 성 명 | | ② 생년월일 | |
| ③ 직 업 (직 위) | | ④ 전화번호 | |
| ⑤ 주 소 (우편번호) | 우편번호 : | | |
| ⑥ 학 력 | | | |
| ⑦ 경 력 | | | |

1. 위 본인은 고성군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평소 실천을 생활화하고,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·신고 및 군민제도·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민간환경감시단 신청서를 제출하며
2. 아울러, 위촉시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제시된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.

붙임 사진 2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인)

고 성 군 수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증

(앞면)

| |
|--|
| <p><u>민간환경감시단증</u> (제 호) 사 진 (3cm×4cm)</p> |
| 성 명: |
| 생년월일: |
| 위촉기간: |
| 고 성 군 수(직인) |

(뒷면)

| |
|--|
| <p>1. 본증 소지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계도활동,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,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.</p> <p>2.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.</p> <p>3.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 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신고처 : 고성군청 환경과</p> |
|--|

○ 용지규격 : 6cm×9cm (가로×세로)

○ 지 질 : 120L/B

○ 색 상 : 노란색

○ 사 진 : 3cm×4cm (가로×세로)

